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863호 2024. 9. 2.(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3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1-503호선)사업 실시 계획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열람 — 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42호 2024년도 하반기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 신청 안내 ————— 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4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56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62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68호 인천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4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71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71

차 례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7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79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0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17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9.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솔모랭이길 9 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9.2.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4-9-2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67-24	인천광역시 서구 솔모랭이길 9 (원당동)	20200720	솔모랭이라는 옛 지명에서 착안	
2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676-8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 66-11 (대곡동)	20130730	법정동 명칭 반영	
3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62-1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로13번안길 24 (오류동)	20090922	오류로13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09-7, 209-35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47번길 42 (가좌동)	20090706	원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33-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380 (왕길동)	20090710	검데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분할) 고시조서

고시일 : 2024-9-2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1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190번길 28 (경서동)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190번길 28 (경서동)	소유자신청	20090922	도요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190번길 28 (경서동)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190번길 28-1 (경서동)	소유자신청	20090922	도요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공고 제2024-173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1-503호선)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열람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9-1533(2019. 12. 18.)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도로명: 중로1-503호선, 사업명: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외도로(중로1-503호선) 개설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계획과(☎560-476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9. 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503호선)
- 명칭: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외도로(중로1-503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도로	중로	1	503	20 (20~24)	20 (20~24)	673	-	59	614	1,926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5. 3.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열람 장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장소: 인천 서구청 본관 4층 도시계획과
-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방법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외도로(중로1-503호선) 개설공사

구분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소유자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변경 없음	백석동	11-5	전	1,051	1,05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변경 없음	백석동	11-6	전	531	53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변경 없음	백석동	10-1	전	106	10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	변경 없음	백석동	12-13	전	127	127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변경 없음	백석동	13-1	도로	1	1	인천광역시				
6	변경 없음	백석동	226-17	도로	110	110	국 (국토교통 부)				

공 램 의 견 서

공람내용	도시계획시설(도로: 종로1-503)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주요내용	도시계획시설(도로: 종로1-503)사업 실시계획인가		
제출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의 견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1742호

2024년도 하반기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 신청 안내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관계자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2024년도 하반기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 신청을 안내(공고)하오니, 해당 공동주택(의무관리단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4. 8.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운영 개요

- 운영목적 :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대한 단지별 맞춤형 방문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의 자치역량 강화
- 신청대상 :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
- 교육대상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주체, 입주자 등
- 교육장소 : 선정단지 내 회의실 등
- 교육시간 및 인원 : 단지별 2시간 정도(10명~20명)
 - * 교육시간은 신청단지와 협의하여 조율 가능
 - * 인원은 최소 10명 이상 최대 20명 이하로, 인접 단지와 공동 신청 가능
- 강 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소속 전문강사
- 교육내용
 -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규약 및 제규정에 관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절차
 - 기타 단지별 관리 취약분야의 요청사항 및 현안문제 자문 등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9월~10월(총 3개 단지 계획으로 예산범위 내 선착순 실시)
 - 신청장소 : 서구청 주택관리과(문의 : 주택민원팀 ☎ 032-560-3121)
 - 신청자 :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신청방법 : 방문(선착순)
 - 신청서류 :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실 신청서 1부 [붙임 참조]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 서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 또는 새소식에 안내문 및 서식 게재

□ 조건 및 유의사항

- 교육단지는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신청서 제출시 보완사항이나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 후순위자 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교육은 총 3회(회별 1개 단지로 3개 단지 실시)로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상 사유로 변동(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으며, 선정된 단지에서 취소를 할 경우 순차적으로 후순위 공동주택을 교육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교육인원은 단지별로 최소 10명 이상 최대 20명 이하를 충족해야 가능하므로 참석 가능한 인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 바랍니다. 다만, 1개 단지에서 인원이 적을 경우 인접 단지과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함.
- 선정된 단지에 한하여 결과를 통보할 예정으로, 교육 일정(시간 등)은 선정 단지 및 전문강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2024. 9월 ~ 11월 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붙임: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 신청서 1부. 끝.

<붙임>

서식 1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 신청서

단지명		연락처	
주 소			
참여인원	총○○명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명,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 관리주체 ○명, 입주자등 ○명) (최소10명~최대20명)		
신청사유	교육내용 확인 후 간략히 기재		
단지 내 관리 취약분야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기타 요청사항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교육을 원하는 일시 등 기재		
<p>위와 같이 찾아가는 맞춤형 교실 운영에 따른 교육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월 일</p> <p>신청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 ○ (서명 또는 인)</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174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9.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현재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교육혁신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및 협의회 설치를 임의 규정화하고, 비상설로 운영토록 함 (안 제7조, 안 제9조)

- 안전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안 제8조, 안 제9조)
- 회의 개최 횟수(매년 1회 이상 원칙,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규정 삭제(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 전화 032-560-0872, 팩스 032-560-2716, 이메일 nalchgi7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현재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교육혁신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및 협의회 설치를 임의 규정화하고, 비상설로 운영토록 함(안 제7조, 안 제9조)
- 안전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안 제8조, 안 제9조)
- 회의 개최 횟수(매년 1회 이상 원칙,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규정 삭제(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비상설 운영위원회로 둔다”로 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9조제1항 중 “둔다”를 “비상설 실무협의회로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는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 공동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서구 교육혁신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혁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7조(서구 교육혁신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 ----- ----- <u>비상설 운영위원회로 둔다.</u></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략)</p>	<p>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u><신 설></u></p>	<p><u>② 운영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u></p>
<p>② ~ ⑤ (생략)</p>	<p>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p>
<p>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구로 실무협의회를 둔다.</p>	<p>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 ----- <u>비상설 실무협의회로 둔다.</u></p>
<p><u><신 설></u></p>	<p><u>② 실무협의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u></p>
<p>② ~ ⑧ (생략)</p>	<p>③ ~ ⑨ (현행 제2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p>
<p>제10조(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 임기는 다음과</p>	<p><u><삭 제></u></p>

같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해촉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2조(회의 등)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③·④ (생략)

제11조(위원의 해촉) -----

경우에는 -----
-----.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 공동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p>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의견 제출인 주소</p> <p style="margin-left: 400px;">(전화 :)</p> <p style="margin-left: 300px;">성명 (서명 또는 인)</p> <p>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p>	
비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1756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9.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현재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정비(안 제7조제1항)
- 안전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안 제7조제5항)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 전화 032-560-0875, 팩스 032-560-2716, 이메일 robbie3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과 관련하여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자체의 위원회 운영 방식을 최적화하고 위원회로서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정비(안 제7조제1항)
-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안 제7조제5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28.>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1762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9.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2. 개정이유

「경관법」 및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우리 구의 내실 있는 경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절차법」과 중복된 조문 정비(안 제8조)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 개정 및 경관 변경 심의 대상의 범위 신설(안 제21조, 별표2, 별표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정비(별표5)

- 「경관법 시행령」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와 중복된 제24조 삭제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26조)
- 「경관법 시행령」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와 중복된 조문 정비(안 제30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도시재생경관, 전화 032-560-0801, 팩스 032-560-27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관법」 및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우리 구의 내실 있는 경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절차법」 과 중복된 조문 정비(안 제8조)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 개정 및 경관 변경 심의 대상의 범위 신설(안 제21조, 별표2, 별표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정비(별표5)
- 「경관법 시행령」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와 중복된 제24조 삭제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26조)
- 「경관법 시행령」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와 중복된 조문 정비(안 제3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제39조의2”를 “제39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건축물(단,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건축물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5.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6.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관 심의 결과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 2. 건축물 규모의 변경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3. 건축물 형태, 색채, 마감재 등의 변경이 전체 입면 면적의 10분의 1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4. 공개공지 및 옥외 조경 등의 외부공간계획의 변경이 전체 외부공간 면적의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제21조”를 “영 제25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영 제23조제5항”을 “영 제2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를 “공동위원회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로 한다.

별표 2,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경관심의 대상인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제21조제2항제1호 관련)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중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2.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건축물
3.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4.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외벽 면적(정면과 측면 및 배면의 입면면적과 옥상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20% 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별표 5]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규모(제23조제1항제4호 관련)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단,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 및 조례를 따른다.

1. 총 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 10억 원 이상 다음 각목의 사업 또는 시설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 라. 구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 총 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 5억 원 이상 다음 각목의 사업 또는 시설
 - 가. 특화가로 조성사업
 - 나.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디자인)를 적용한 시설물 설치 사업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2. (생략)</p> <p>3.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 수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따른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② <u>구청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u></p> <p>1. <u>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u></p> <p>2. <u>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u></p> <p>3. <u>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u></p>	<p>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 ----- <u>제39조의3</u>----- -----.</p> <p><u><삭제></u></p>
<p>제21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u>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u></p>	<p>제21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u>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u></p>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별표 1과 같다.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관지구 건축물(단, 법 제2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2. 중점경관관리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5.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 6.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삭 제>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중점경관관리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구 및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
관이 건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로서 별표 3에 해
당하는 건축물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건축물

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별표 4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④ (생략)

<신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
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관 심의 결과를 위반하지 아
니할 것

2. 건축물 규모의 변경이 건축물
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
는 경우

3. 건축물 형태, 색채, 마감재 등의
변경이 전체 입면 면적의 10분
의 1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공개공지 및 옥외 조경 등의 외

부공간계획의 변경이 전제 외부
공간 면적의 10분의 1을 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삭 제>

제24조(경관위원회의 구성) ① 경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
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
하는 구의원

2. 구 또는 경관과 관련 있는 행정
기관의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
· 환경·문화·농림·디자인·
옥외광고 등 경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4. 도시 범죄예방 및 방법진단 분
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
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
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21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
의에서 제척된다.

제3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
회의 위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
거나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互選)한다.

3.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2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영 제25조

-----.

제3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

<삭 제>

2. 공동위원회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

□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관법 시행령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8.>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 2. 28.>

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2. 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2. 28.>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
·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장
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해당 시·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
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시·도의 지방의회를 말한다)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
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2. 28.>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
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1768호

인천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9. 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의 공정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채용 심의기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채용 관련 심의기구 설치·기능 사항(안 제3조의2)
- 나. 심의기구의 구성(안 제3조의3)
- 다. 심의기구의 운영(안 제3조의4)

3. 개정규정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과

- 주 소: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전화번호: 032-560-3112 (FAX: 032-560-2710)

인천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의 공정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채용 심의기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채용 관련 심의기구 설치·기능 사항(안 제3조의2)
- 나. 심의기구의 구성(안 제3조의3)
- 다. 심의기구의 운영(안 제3조의4)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설치) ① 채용권자는 공무원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원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이하 “심의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관련 심의기구가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이로 대체할 수 있다.

1. 공무원직근로자 등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원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기타 채용권자가 채용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심사한 경우에는 해당 채용계획의 적정성은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3조의3(심의기구의 구성) ① 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의기구의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기구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구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3.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다.

⑥ 심의기구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되, 안건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3조의4(심의기구의 운영) ① 심의기구의 회의는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기구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의기구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⑤ 심의기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직근로자 등의 인사·복무를 총괄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⑥ 심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관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⑦ 그 밖에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5(수당 등) 심의기구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기구의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기구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구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3.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다.

⑥ 심의기구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되, 안전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 설>

제3조의4(심의기구의 운영) ① 심의기구의 회의는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전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기구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

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의기구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⑤ 심의기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근로자 등의 인사·복무를 총괄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⑥ 심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관한다.

- 1. 일시 및 장소
- 2. 참석위원
-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⑦ 그 밖에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5(수당 등) 심의기구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1771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9.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금고 지정 및 운영의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금고 지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공정성 미비 조항의 정비를 위해 전문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에서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위임한 금고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 보완(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10조)

- 나. 국민권익위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반영(안 제9조, 제14조)
- 다. 금고 약정, 금고 약정의 해지, 금고 운용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세무1과, 전화 032-560-4192, 팩스 032-560-27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금고 지정 및 운영의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금고 지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공정성 미비 조항의 정비를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에서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위임한 금고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 보완(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10조)
- 나. 국민권익위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반영(안 제9조, 제14조)
- 다. 금고 약정, 금고 약정의 해지, 금고 운용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고 지정 방법)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한 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한 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금고 약정 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3조(금고 지정 평가기준) ①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의 편의성
4. 금고 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제4조(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

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임명되거나 위촉된 때부터 금고 약정 체결일까지로 하며,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제7조(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구청장은 금고 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고 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게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위원회는 금고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배점 부여 기준 등을 확정하고, 해당 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의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금고의 지정)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제11조(금고 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

과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 약정서에는 취급 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起債),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 해석,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금고 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또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금고 약정서 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운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금고 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를 평가로, 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본다.

제13조(금고 운용 보고) ①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일반·특별회계, 기금별 자금 운용 상황,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 과목별 금액, 예치 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

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또는 구청장이 금고 관리를 위하여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사업비) 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금고가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협력사업비 총액을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금고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본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6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자기자본이익비율 (수익성) - 고정이하역신비율 (건전성) - 대손충당금 적립율 (건전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8 18 (6) (5) (6) (1)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라. 공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마.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7 4 6 1 2	
3. 주민이용의 편의성		21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	7 5 6 3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	6 8 8 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6. 기타사항		2	
	가. 탄소중립 기여도 -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 비교평가	2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6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장 최근자료 기준)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8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1)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2)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3)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4) 대손충당금 적립율 (건전성, 1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1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마.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주민이용의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발생시 대책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3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과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강화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 (2점)

-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7점)**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 협력사업계획 (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6. 기타사항 (2점)**가. 탄소중립 기여도 (2점)**

-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관계법령 발췌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0. 30.>

-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6. 보칙

②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17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9.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나. 상위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세무1과, 전화 032-560-4192, 팩스 032-560-27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 나. 상위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을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조제3항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제4조 중 “조례 제6조제1항을 ”을 “조례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중 “조례 제8조제1항을 ”을 “조례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금융기관 제안서 심사결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관련 ()의 제안서 심사결과에 따라,
총점 점(평균 점)을 획득하였음을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심사결과
(의견)

첨부서류

금융기관 심사표 및 집계표 각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5조----- ----- ----- -----.</p>
<p>제3조(심의 및 평가) ① (생 략)</p> <p>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심사표 제출시 심의위원별로 서명·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u>제6조제3항에</u> 의한 심사결과 제출서식은 다음 <u>각 호의 서식에</u> 의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에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소수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p>	<p>제3조(심의 및 평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제8조에</u> 따른 ----- ----- <u>각 호와</u> 같다. ----- ----- -----.</p>
<p>1.·2. (생 략)</p> <p>제4조(제안서 접수등) 금고지정 주관부서에서는 금고지정 경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례 <u>제6조제1항</u>의 공고사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한 제안서 10부를 접수하고, 접수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 후 심의·평</p>	<p>1.·2. (현행과 같음)</p> <p>제4조(제안서 접수등) ----- ----- ----- <u>제7조제1항</u>----- ----- -----</p>

<p>가시까지 봉인하여 보관한다.</p> <p>제5조(금고변경 및 해지를 위한 심의·평가) 조례 <u>제8조제1항</u>에 따른 금고변경 또는 해지 결정을 위한 심의·평가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3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p> <p>제5조(금고변경 및 해지를 위한 심의·평가) --- <u>제12조제1항</u>-----</p> <p>-----</p> <p>-----</p> <p>-----.</p>
---	---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6. 보칙

②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177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 등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4조)
- 나. 상위 법령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9조)
- 다.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사항 신설(안 제24조)
- 라. 공모전 심사 사항을 위원회 기능에 추가(안 제2조, 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총무과, 전화 560-3025, 팩스 560-27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 등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4조)
- 상위 법령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9조)
-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사항 신설 (안 제24조)
- 공모전 심사 사항을 위원회 기능에 추가(안 제2조, 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 관련 공모전 심사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제1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금 관련 공모전 심사에 관한 사항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공모전)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답례품 관련 공모전, 기금 관련 공모전 등 각종 공모전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3. (생략)</p> <p><신설></p> <p>4.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서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p> <p>1. ~ 10. (생략)</p> <p>11. 「<u>무형문화재</u>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p>	<p>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24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 관련 공모전 심사에 관한 사항</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p> <p>-----</p> <p>-----</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무형유산</u>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p> <p>-----</p>

12. ~ 13. (생략)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운용을 위해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의 모집·운용을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신설>

12. ~ 13.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금 관련 공모전 심사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24조(공모전)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답례품 관련 공모전, 기금 관련 공모전 등 각종 공모전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관계 법령 발췌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 사. 생략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8. 21.>

제12조(제도의 홍보·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분석 및 연구 등

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②~③ 생략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③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당해 연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 8. 13.>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 | |
|----|--|
| 비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1779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9. 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그간의 주민자치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중 해당 동에 소재한 법인을 기관으로 변경하고 기관 및 단체 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7조)
- 나. 위원 선정방식을 변경하고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조

항 신설 (안 제7조의2, 제8조)

다. 간사 지원 자격 확대(안 제10조)

라. 수시 위촉된 위원에 대한 임기 및 위촉 제한 기간 명확화(안 제8조제 7항 및 제20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총무과, 전화 560-3022, 팩스 560-2710, 이메일 suker8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그간의 주민자치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중 해당 동에 소재한 법인을 기관으로 변경하고 기관 및 단체 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7조)
- 나. 위원 선정방식을 변경하고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7조의2, 제8조)
- 다. 간사 지원 자격 확대(안 제10조)
- 라. 수시 위촉된 위원에 대한 임기 및 위촉 제한 기간 명확화(안 제8조 제7항 및 제2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제4호 중 “법인”을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2. 직능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3. 공공단체: 법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선정을 위한 해당 동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주민자치회장
2.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4. 동 소재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주민자치회장이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선정위원회 위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민자치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자격 확인

2.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의 15퍼센트 이상 선정되도록,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주민자치회”를 “선정위원회”로,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를 “예비후보자”로,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하는 해당 동

소재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거나 동장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3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주민자치회”를 “선정위원회”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발생한”을 “발생하였거나 제6조의 정수 충원을 위해 신규위촉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임”을 “해당 동 주민자치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제1항부터 제5항”을 “제1항부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위원중 호선하거나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을 “위원 중 호선하거나 서구”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정 전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중이거나 위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제7조의2 위원선정

위원회 및 제8조 위원의 선정 등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생략)

<신설>

는 법인단체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

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선정을 위한 해당 동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주민자치회장
- 2.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 3. 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 4. 동 소재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주민자치회장이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선정위원회 위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민자치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선정위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 만,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60퍼센 트를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의 15퍼센트 이상 선정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 단체 및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주민 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원회 위원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자격 확인
2.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에 관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 나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의 15 퍼센트 이상 선정되도록,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신 설>

② 제1항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3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단,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은 최소 2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같음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하는 해당 동 소재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거나 동장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3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 예비후보자----- 정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 제4항-----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 발생하였거나 제6조의 정수 충원

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 1. (생략)
-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생략)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추천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⑩ (생략)

제10조(사무국 또는 간사) ①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거나 간사를 선정할 수 있다.

- 1. (생략)

을 위해 신규위촉하는 ----. ---- 해당 동 주민자치회 -----.

- 1. (현행과 같음)
- 2. ----- 제1항부터 제6항-----.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삭제>

<삭제>

⑨ (현행 제10항과 같음)

제10조(사무국 또는 간사) ① -----

-----.

- 1. (현행과 같음)

2. 간사는 주민자치회 위원중 호
선하거나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주민 중에서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② (생략)

제20조(위원의 임기 등) ①·② (생략)

③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임
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
 다.

2. ----- 위원 중 호
선하거나 서구 -----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의 임기 등)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7. 10.]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